

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. 7. 6 선고 2021가단120946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연기

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로이즈 담당변호사 조아라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3. 6. 8.

판 결 선 고 2023. 7. 6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/2 지분에 관하여 2018. 6. 12. 체결된 증여계약을 45,625,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45,625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C에게 2012. 8. 23. 1억 원(이하 ‘①대출금’ 이라 한다)을, 2012. 8. 28. 1천만 원(이하 ‘②대출금’ 이라 한다)을, 2013. 9. 3. 1억 원(이하 ‘③대출금’ 이라 한다)을, 2018. 5. 18. 1억 5천만 원(이하 ‘④대출금’ 이라 한다)을 각 대출해 주었다.

나. C은 2018. 6. 14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 한다) 중 1/2 지분에 관하여 배우자인 피고 앞으로 2018. 6. 12.자 증여(이하 ‘이 사건 증여’라 한다)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.

다. C은 ①대출금 상환기일인 2019. 8. 17., ②대출금 상환기일인 2019. 9. 2., ③대출금 상환기일인 2019. 9. 3. 위 각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, 그에 따라 ④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도 상실하였으며, 2021. 11. 17.경을 기준으로 149,888,658원 및 그 중 8,451,226원에 대하여는 2021. 11. 18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9.09%의, 105,097,301원에 대하여는 2021. 11. 18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8.1%의, 7,646,669원에 대하여는 2021. 11. 18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.88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이 원고의 C에 대한 위 각 대출금 채권잔액의 합계액이다.

라. 원고는 2019. 9. 6. 대여금 21,149,854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C 소유의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D 외 4개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결정(대전지방법원 2019카단2807, 이하 ‘이 사건 가압류결정’이라 한다)을 받았다.

【인정근거】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3호증(각 가지번호 포함), 갑 제5호증의 11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당사자 주장의 요지

가. 원고

이 사건 증여 행위는 무자력 상태인 C이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켜 채권자인 원고를 해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, 이 사건 증여로 피고가 얻은 이익 상당액인 45,625,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증여의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위 45,625,000원의 지급을 구한다.

나. 피고

1) 원고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 무렵에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라는 점을 알았음에도 그로부터 1년이 지나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.

2)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C에 대한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, 이 사건 증여 경위에 비추어 C과 피고에게는 사해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.

3. 판단

가.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하여

1)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(민법 제406조 제2항), 채권자취소권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‘취소원인을 안 날’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,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,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,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,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,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,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(대법원 2013. 4. 26. 선고 2013다5855 판결 등 참조).

2) 이 사건을 보건대, 원고는 아래 제3의 나. 2) ④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9. 6. 28.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면서 이 사건 증여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알았다고 보여지나, C이 앞서 본 바와 같이 ①대출금 상환기일인 2019. 8. 17., ②대출금 상환기일인 2019. 9. 2., ③대출금 상환기일인 2019. 9. 3. 위 각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이후 위 각 대출금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2019. 9. 6.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받았던 것으로 보일 뿐,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가압류결정 무렵에는 C이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이 사건 증여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,

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.

나. 본안에 관하여

1)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.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,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,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,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·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(대법원 2017. 11. 29. 선고 2017다241819 판결 등 참조).

2) 이 사건을 보건대, 앞서 든 증거들, 갑 제5호증, 을 제1 내지 8호증(각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, 설령 C이 무자력 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에 나아갔으며 원고가 위 각 대출금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이 사건 증여에 대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, C이나 피고가 당시 이 사건 증여 행위로서 원고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는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.

따라서 C이나 피고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피지 않더라도 원고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서 이 사건 증여를 취소할 수 없고,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① 이 사건 부동산은 아파트로서 부부인 C과 피고가 2007. 7. 5. 분양을 받아 2010. 1. 19. 각 1/2 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함께 거주하여 온 곳이다.

② C과 피고가 위 분양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C 및 피고로 하여, 원고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일과 같은 날인 2010. 1. 19. 채권최고액을 141,600,000원으로 한, 이후 2010. 2. 24. 채권최고액을 68,400,000원으로 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(이하 ‘이 사건 원고 명의 각 근저당권등기’라 한다)를 마쳤다.

③ 한편 C이 피고와 함께 위와 같이 이 사건 원고 명의 각 근저당권등기의 채무자로 되어 있는 것이 C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는 등 C의 사업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, C과 피고는 원고에게

사업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C의 사정과 이 사건 증여사실을 알리고 C을 이 사건 원고 명의 각 근저당권등기의 채무자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로부터 승낙을 얻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.

④ 이에 피고가 주식회사 E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이 사건 원고 명의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. 6. 28. 해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원고 명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함과 동시에 주식회사 E이 채무자를 피고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159,000,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던 것으로 보인다.

⑤ 위와 같은 이 사건 증여 및 이 사건 원고 명의 각 근저당권등기의 말소와 동시에 주식회사 E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위에 비추어 볼 때, C과 피고는 C의 사업자금 조달을 다소나마 용이하게 해 보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주택담보대출의 종전 채무자를 ‘C과 피고’에서 ‘피고’로만 변경하려 했던 것으로서, 이는 이 사건 증여 전후를 비교해 보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C의 지분을 취득했지만 그에 상응한 채무를 추가로 부담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의 재산적 가치에는 거의 변동이 없는 정상적인 거래관계로 보일 뿐이므로, 당시 C과 피고가 이 사건 증여로써 C의 원고에 대한 위 각 대출금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.

4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이동호

별지

부동산의 표시

1. 1동의 건물의 표시

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동[도로명주소]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

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

제14층 호 철근콘크리트구조 84.9826㎡

대지권의 표시

토지의 표시 : 1.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대 42467.8㎡

대지권의종류: 1. 소유권대지권

대지권의비율: 42467.8분의 39.397

